

고열량·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25호, 2009. 5. 8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열량이 높고 영양가(營養價)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「고열량·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」을 제정고시 하였습니다.

□ 주요 내용

가. 고열량·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마련함(안 제3조)

- (1)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 기준으로서 열량 및 영양가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- (2) 영양성분 기준을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고, 구분에 따라 열량, 포화지방, 당류, 나트륨 및 단백질 등의 함량 기준을 설정함.

- (3)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학교판매 금지 및 광고 제한의 대상이 되는 식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.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26호, 2009. 5. 8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 영업자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자 「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」을 제정고시 하였습니다.

□ 주요 내용

가.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대상 영업자를 정함(안 제2조).

- (1) 영업자 및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제품 생산 환경이 다르므로 영업자별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기준을 분류할 필요가 있음.
- (2) 지정 대상 영업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·가공·수입업자,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업자 및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위탁급식 영업자로 정함.
- (3) 영업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을 차별화 적용할 수 있음.

나.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을 마련함(안 제3조).

- (1)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.
- (2) 지정 기준은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계획,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·영양 관리,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 활동, 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및 개선 실적 등으로 정함.
- (3) 지정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정행위에 대한 일관성, 투명성,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.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27호, 2009. 5. 8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·가공·유통·판매를 권장하고자 「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」을 제정고시 하였습니다.

□ 주요 내용

가.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

마련함(안 제3조).

- (1) 어린이 기호식품에 품질인증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